

과천시의회

제2호

공간에너지활용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과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3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

1. 공간에너지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공간에너지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1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안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공간에너지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안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간에너지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영주 위원께서는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중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2 (공간에너지활용을위한특위 제2차)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아직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현재 과천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결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어떻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방향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간 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특위는 별도로 소집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 공간 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공간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과천시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위원회의 구성

- 자문위원회 구성 : 15인 이내
 - 위 원 장 : 1 인
 - 간 사 : 1 인 (※자문위원회 위원 중 자문위원장이 위촉)
 - 자문위원회 구성
 - ↳ 당 연 직 : 시의원 2명, 과천시 기획감사실장
 - ↳ 위 촉 직 : 공간에너지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 자문위원회 임기 : 2014. 6. 30까지

□ 위원회의 기능

-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의 생태 환경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 자문위원 위촉

-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자문위원 해촉

- ☞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 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위원회 회의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자문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비치

□ 향후추진 계획

○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3. 23 금 (16 : 00) / 의회 3층 회의실
- 내 용
 -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장(안) 『붙임 2』
 -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방향 토의
 - 회의록 작성 : 서식 『붙임 3』

□ 참고자료

- 과천시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붙임 4』

『붙임 1』

공간에너지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명단(안)

구분	연번	소속/단체	성명	성별	주요 경력사항
당 연 직	1	과천시의회	황순식	남	시 의 원
	2	과 천 시	권영구	남	기 획 감 사 실 장
위 촉 직	3	한국교통대	홍기배	남	교 통 대 교 수
	4	표준과학원	방건용	남	연 구 원
	5	한경대학교	황성구	남	한 경 대 교 수
	6	브이엔케이	공관식	남	공 학 박 사 , 기 업 대 표
	7	한국교통대	이상규	남	교 통 대 교 수
	8	부 산 대	장정대	남	부 산 대 교 수
	9	공간에너지연 구 회	이은재	남	공 간 에 너 지 연 구 회 대 표
	10	공간에너지연 구 회	조형욱	여	(주) 기 분 좋 은 섬 유 대 표
	11	공간에너지연 구 소	서용광	남	공 간 에 너 지 제 작 소 장

『붙임 2』

위 촉 장



귀하를 과천시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2. 3. 23 ~ 2014. 6. 30)

2012년 3월 23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공간에너지활용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붙임 3』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시 : 2012. 3. . ~

장 소 : 의회 3층 회의실

토의내용

○

의결내용

○

확 인 자 : 자문위원장 성명 (인)

작성자 (간사) : (인)

『붙임 4』

과천시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과천시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간에너지"란 에너지원으로 기존의 전기나 추가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로서, 탄소배출이 제로인 에너지를 가리키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간구조 및 형상 에너지
2. 내부폭발(응폭) 에너지
3. 공진(공명) 에너지
4. 환경 신기술
5. 생체기 에너지
6. 상온 핵융합 에너지
7. 원소 변환 에너지
8. 기타 공간에너지 관련 신기술

제3조(기능)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이나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의 생태 환경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과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4.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

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 2명,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간에너지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은 위촉직으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 위원회 위원 중 자문위원장이 선임하는 간사 1인을 둔다.
- ②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

- 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소집 및 부의안건을 위원장과 협의 상정하고 회의내용 및 결과를 정리 보고한다.

제6조(회의)

- ①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자문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 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시의원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시민설명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활동결과보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 심의, 자문에 필요

한 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운영경비 및 지원 등)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0 (공간에너지활용을위한특위 제2차)

○출석위원 4명

○출석위원 성명

안중현 이홍천 하영주 박정원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간사

사무과장